2019년도 제1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Ⅰ. 회의 개요

o 일　　시 : 2019. 7. 2.(화요일), 11:00

o 장　　소 : 보호원 9층 회의실

o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

- 심의위원 : 박성호, 임진모, 전응준(분과위원장) 위원

o **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**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..... 분과위원장

2. 전차(제2019-99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.....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..... 분과위원장

〈**의결안건**〉 ※ 안건 검토 보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・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4. 폐회선언 ..... 분과위원장

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,100건(안건번호 제2019-60665호~62352호)

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 1건(안건번호 제2019-55057호)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'불법복제물등'에 해당하므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
  나머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,099건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을 권고하고,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함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o 전응준 분과위원장 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

2. 전차(제2019-99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전응준 분과위원장 :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

- A 위원 :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단순 자구수정 의견임

- B 위원 : 자구수정에 찬성하며 그 외에는 회의록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음

- C 위원 : 회의록에 이상이 없고 그대로 공개하자는 의견임

- 전응준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

3. 안건상정

o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

권고 심의

- 성원영 전문위원 :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-60665호~62352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3,100건임
  (보호원에서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19-60665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, 카페에서 자신의 질문에 답변을 한 이용자에게 '빌리 아일리시(Billie Eilish)' 앨범 전곡의 FLAC 음원 파일을 보내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.

- 전응준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-6066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

- C 위원 : '빌리 아일리시'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가수여서 앞으로도 불법복제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 비교적 최근에 발매된 앨범의 전곡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음반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

- B 위원 : 이메일로 동일한 저작물을 다수에게 발송하는 행위가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, 이는 저작권법상 '전송' 행위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

- A 위원 : 불법복제물의 이메일 발송을 안내하는 본문과 불법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댓글로 구성되고 불법복제물이 실제 전송된 사안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'불법복제물등'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

- 전응준 분과위원장 : 안건번호 제2019-60665호는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

- 전응준 분과위원장 :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-60666호~6235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

- 성원영 전문위원 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보여주면서)안건번호 제2019-60666호~62352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

- B 위원 :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, 프로그램, 게임, 만화, 출판,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

- A 위원 : 모두 데드 카피이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이며, 심의일 현재 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경우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

- C 위원 : 단순 불법복제물 전송 건이므로 시정권고 의결을 하되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중단 된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자는 의견임

- 전응준 분과위원장 :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-60666호~6235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,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

가결함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-60665호~62352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,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”

4. 폐회 선언

o 전응준 분과위원장이 제1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

2019년 제1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19. 7. 9.

분과위원장 전응준

위원 임진모

위원 박성호